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 용 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김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05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이용 범위의 확대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 범위를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서 350m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역세권과 다름없는 교통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체계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개정 시행(’21.7.13.)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 관련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